

## 2. 首都圈整備計劃法施行令改正令

大統領令 第14,234號 1994. 4. 30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 1 조(목적) 이 영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지역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이라 함은 인천직할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한다.

제 3 조(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등)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구집중유발시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개방대학 또는 전문대학(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각각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층의 바닥면적과 사무실 및 창고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공공청사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이상인 것. 다만, 수도권지역이나 수도권 및 그 인근 시·도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제1차소속기관 및 법인(지점을 포함한다)의 청사 또는 사무소를 제외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제1차소속기관(문화기관 및 의료기관을 제외한다)의 청사

나.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공공

법인”이라 한다)의 사무소(연구소 및 연수시설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에 해당하는 청사를 제외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및 그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법인

(2)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자기업체

(3)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 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연을 받거나 받은 법인

(4) 개별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허가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해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

4.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업무용건축물·판매용건축물 및 복합용건축물.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의 사무소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가. 업무용건축물 :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업무용시설”이라 한다)이 주용도(당해 건축물의 업무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분류에 의한 용도별 면적(이하 “용도별 면적”이라 한다)중

가장 큰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만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업무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업무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2만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9호 마목의 연구소 및 제11호나목의 일반업무시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4호의 근린생활시설, 제16호의 전시시설 및 제18호의 창고시설. 다만, 각 시설의 면적이 (1)의 연구소 및 일반업무시설 면적의 합계보다 작은 시설에 한한다.

나. 판매용건축물 :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1) 다음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판매용시설”이라 한다)이 주용도(당해건축물의 판매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용도별 면적중 가장 큰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판매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판매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13호의 판매시설 및 제14호의 위락시설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4호의 근린생활시설, 제10호의 운동시설, 제15호의 관람집회시설, 제16호의 전시시설 및 제18호의 창고시설. 다만, 각 시설의 면적이 (가)의 판매시설 및 위락시설 면적의 합계보다 작은 시설에 한한다.

(2) 판매용시설 및 업무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판매용시설 및 업무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이상 2만5천제곱미터미만이고 판매용시설의 면적이 업무용시설의 면적보다 큰 건축물의 판매용시설 및 업무용시설에 해당하는 부분

다. 복합용건축물 : 업무용시설 및 판매용시설이 주용도(당해 건축물의 업무용시설 및 판매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용도별 면적중 가장 큰 경우를 말한다. 이 목에서 같다)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만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업무용시설 및 판매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업무용시설 및 판매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2만5

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5.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연수시설 및 학원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 나목 및 다목의 시설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이상인 것. 다만, 지방 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이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원(교습과정이 입시 또는 고시인 학원으로서 강의실의 연면적이 66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서 도로법 제3조제1항제1호의 도로원표를 중심으로 한 반지름 5킬로미터이내에서 설립되는 것

6. 제3호 내지 제5호의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의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지가 연접하고 소유자가 동일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의 면적을 합산한다.

제 4 조(대규모개발사업의 종류등)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택지조성사업(이하 “택지조성사업”이라 한다)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이상

인 것.

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 사업

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대지조성사업 및 아파트지구 개발사업

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시가지조성사업

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및 특수지역안에서의 주택지조성사업

마.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업용지 조성사업(이하 “공업용지조성사업”이라 한다)으로서 그 면적이 30만제곱미터이상인 것

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업단지개발사업 및 특수지역개발 사업

나.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한 수출 자유지역조성사업

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공업용 지조성사업

라.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한 중소기업 협동화단지조성사업

마.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용지조성사업 및 공장설 립을 위한 공장부지조성사업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광지조 성사업(이하 “관광지조성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이상인 것. 다만, 공유수 면매립지에서 시행하는 관광지조성사 업은 30만제곱미터이상인 것으로 한 다.

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및 관 광단지조성사업과 관광시설조성사 업

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유원시설치사 업

다. 온천법에 의한 온천이용시설설치 사업

라.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사업

제 5 조(공업지역의 종류등) 법 제2조제5 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 한 도시지역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2.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 에 의한 준도시지역의 시설용지지구 및 취락지구중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지구로서 그 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 인 것

제 6 조(수도권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의 전체규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법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9호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제 7 조(수도권정비계획의 고시)** 건설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정비계획이 결정된 때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 8 조(소관별 추진계획의 집행실적 보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서울특별시·인천직할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정비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추진계획의 집행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9 조(권역의 범위)**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 10조(과밀억제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공공청사·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유발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2.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공공청사(이하

“공공청사”라 한다)

3. 제3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연수시설(이하 “연수시설”이라 한다) 및 동호나목에 해당하는 학원

**제 11조(과밀억제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나 이의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1. 학교의 경우

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안에서의 개방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신설(서울특별시의외의 지역에서의 신설에 한한다)

나.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안에서의 학교의 입학정원의 증원

다. 과밀억제권역안에서의 학교의 이전으로서 교육정책상 부득이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라.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에 의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각 원의 설치를 위한 입학정원의 증원

#### 2. 공공청사의 경우

가. 기존 공공청사의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증축(1회에 한한다)

나. 청사 또는 사무소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제1차소속기관 또는 공공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로 임대하기 위한 용도변경

다. 다음에 해당하는 공공청사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1) 중앙행정기관 및 그 제1차소속기관의 청사(교육·연수 또는 시험기관의 청사를 제외한다)

(2) 무역·금융·보험·증권·언론·정보통신·관광·체육·문화예술·국가정책연구·보건위생·첨단과학과 관련된 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공공법인의 사무소

(3) 서울특별시로부터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전하는 공공청사

(4) 수도권쓰레기매립지역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설치되는 환경관련 공공청사

제12조(성장관리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공공청사·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이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학교·공공청사 또는 연수시설의 신설·증설을 말한다.

#### 1. 학교의 경우

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안에서의 개방대학·전문대학 또는 입학정원이 50인이내인 대학의 신설

나.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안에서의 학교의 입학정원의 증원

다. 수도권안에서의 대학·교육대학 또는 사범대학의 이전으로서 교육정책상 부득이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라. 수도권안에서의 개방대학·전문대학 또는 입학정원이 50인이내인 대학의 이전

#### 2. 공공청사 또는 연수시설의 경우

가. 기존 공공청사 또는 연수시설의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증축(1회에 한한다)

나. 청사 또는 사무소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제1차소속기관 또는 공공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로 임대하기 위한 용도변경

다. 수도권안에서 이전하는 공공청사 또는 연수시설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라. 공공청사 또는 연수시설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서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②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장관리권역안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1.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공장 등의 계획적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역의 주민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공장이 밀집된 지역의 재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13조(자연보전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법 제9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택지조성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3만 제곱미터이상인 것
2.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인 것
3. 관광지조성사업으로서 건축물 및 이

에 수반되는 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인 것

②법 제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공공청사·업무용건축물·판매용건축물·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유발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학교
2. 공공청사
3.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용건축물·판매용건축물 및 복합용건축물
4. 연수시설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나목에 해당하는 시설과 동호다목에 해당하는 시설중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시설

제14조(자연보전권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보전권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나이의 허가등을 할 수 있다.

1. 택지조성사업·공업용지조성사업 또는 관광지조성사업의 경우  
가. 택지조성사업중 그 면적이 6만제곱미터이하인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나. 공업용지조성사업중 최근 3년간의 해당 시·군의 평균적인 인구증가율이 전국의 평균적인 인구증가율보다 낮은 시·군에서 시행되고 그

면적이 6만제곱미터이하인 것으로  
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  
친 것

다. 관광지조성사업중 건축물 및 이에  
수반되는 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6만제곱미터이하인 것  
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 2. 학교의 경우

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  
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안에서의 전  
문대학 또는 입학정원이 50인이내  
인 대학의 신설로서 수도권정비위  
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나.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  
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안에서의 학  
교의 입학정원의 증원

다. 자연보전권역안에서의 전문대학  
또는 입학정원이 50인이내인 대학  
의 이전으로서 교육정책상 부득이  
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 3. 공공청사의 경우

가. 기존 공공청사의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증축(1  
회에 한한다)

나. 청사 또는 사무소를 임차하여 사  
용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제1차소속기관 또는 공공법인의 청

사 또는 사무소로 임대하기 위한  
용도변경

다. 공공청사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  
변경으로서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 4. 연수시설의 경우

가. 기존 연수시설의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증축(1  
회에 한한다)

나. 노동조합법 제13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노  
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전  
국 규모의 사용자단체, 한국노동교  
육원법에 의한 한국노동교육원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  
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연수  
시설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제15조(종전대지)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이라 함  
은 1만제곱미터이상을 말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안  
의 종전대지의 경우에는 2만제곱미터이  
상을 말한다.

제16조(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①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를 말하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제3조제4호다목의 복합용건축물을 말한다.

②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이라 함은 도시재개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조합 기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관계 법률에 의하여 구성된 조합을 말한다.

제17조(과밀부담금의 감면)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지개발사업에 따른 건축물에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3. 건축물중 주차장, 주거용시설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한다.
4. 업무용건축물의 2만5천제곱미터, 판매용건축물의 1만5천제곱미터, 복합용건축물로서 부과대상면적중 판매용시설의 면적이 용도별 면적중에서 가장 큰 건축물의 1만5천제곱미터, 기타 복합용건축물의 2만5천제곱미터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는 각각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

면한다.

제18조(부담금의 산정)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19조(부담금의 부과·징수의 방법등)

①부담금 부과대상건축물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에게 납부대상·납부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건축허가일 또는 신고일에 발부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건축허가사항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연면적이 변경된 때에는 납부고지서를 재발부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대장을 작성·관리하고 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한 자료를 매월별로 다음 달 10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부담금의 납입) 시·도지사는 징수된 부담금중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에 의한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의 귀속분을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1조(공장 총량규제의 대상)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는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장의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22조(공장 총허용량의 설정)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은 공장 건축허가 추이, 공업단지등 공장설립 대상지역등을 감안하여 매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인천직할시 및 경기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공장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의 총허용량(이하 “시·도별 총허용량”이라 한다)을 결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시·도지사는 전년도 공장건축허가량, 공업단지중 공장설립가능지역 및 당해 연도의 공장건축허가 예상량등 시·도별 총허용량 설정에 관계되는 기초자료를 1월 31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공장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도별 총허용량의 범위안에서 지역별로 공장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의 총허용량(이하 “지역별 총허용량”이라 한다)을 할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시·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3조(공장 총허용량의 집행) ①건설부장관은 시·도별 공장건축허가량이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별 총허용량을 초과하여 공장이 과도하게 건축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규모 및 기간 등을 정하여 당해 시·도의 공장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제한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별 총허용량이 할당된 경우 지역별 공장건축허가량이 지역별 총허용량을 초과하여 공장이 과도하게 건축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업종·규모 및 기간등을 정하여 당해 지역의 공장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제한내용을 시·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공장 총량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고, 공장건축허가 실적을 매월별로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학교에 대한 총량규제)**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입학정원의 증원 및 입학정원이 50인이내인 대학의 신설의 허용여부와 그 총증가수(야간제학과와 입학정원의 총증가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건설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2. 개방대학·전문대학의 입학정원의 총증가수는 전년도 전국의 총증가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건설부장관이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광역적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적 기반시설은 대규모개발사업지구와 그 사업지구밖의 지역을 연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호의 기반 시설을 말한다.

1. 대규모개발사업지구와 주변 도시간의 교통시설
2.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3. 용수공급계획에 의한 용수공급시설
4. 기타 광역적 정비가 필요한 시설

②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적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에는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6조(인구영향평가의 내용과 평가서의 작성)** ①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구영향평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1. 인구 및 사회·경제 현황
2. 인구증가 및 이동에 미치는 영향
3. 인구집중억제를 위한 방안

②제1항의 인구영향평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자가 행한 것이어야 한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대학부설연구소
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국토계획기술사중 도시계획분야기술사를 보유한 자에 한한다)

**제27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구성)**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내무부장관·재무부장관·국방부장관·교육부장관·문화체육부장관·농림수산부장관·상공자원부장관·보건사회부장관·교통부장관·체신부장관·총무처장관·환경처장관·국무총리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서울특별시장·인천직할시장 및 경기도지사가 된다.

**제28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서에 따라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간사장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장 및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간사장 및 간사는 건설부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31조(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구성)**

①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무총리행정조정실·경제기획원·내무부·재무부·국방부·교육부·문화체육부·농림수산부·상공자원부·건설부·보건사회부·교통부·체신부·총무처·환경처·법제처·국무총리비상기획위원회·서울특별시의 2급 또는 3급공무원과 인천직할시·경기도의 3급 또는 4급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 각 1인과 수도권정비정책과 관계되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건설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32조(실무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실무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실무위원회의 처리사항)** 위원회가 법 제2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

여 그 업무의 처리를 실무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4조(관계기관등의 협조)** ①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관계기관 또는 관계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5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6조(전문기관에의 자문등)** ①건설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변경 및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에 관한 자문이나 조사·연구를 필요로 하는 관계 행정기관이 따로 있을 때에는 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기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증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2호가목·제12조제1항제2호가목·제14조제3호가목 및 동조 제4호가목의 규정에서의 기존 공공청사 및 기존 연수시설과 별표 2 제1호나목의 규정에서의 기존 건축물에 관한 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설치된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 3 조(공업지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안에서의 공업지역 지정에 대하여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립되기까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종전의 개발유도권역에 해당되는 지역안에서는 종전의 개발유도권역안의 개발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2. 종전의 개발유보권역안에 해당되는 지역안에서는 시·군별로 36만제곱미터(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성하였거나 조성중인 면적을 포함한다)안에서 지정할 수 있다.

3. 제12조제2항 각호에 적합한 경우로서 시급히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제 4 조(공업용지조성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종전의 개발유도권역안의 개발계획에 포함된 공업용지로서 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 및 건설부장관의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종전의 개발유보권역에 해당되는 지역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부장관의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공업용지조성사업의 위치·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자격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할 수 있다.

**제 5 조(학교에 대한 총량규제에 관한 경**

**과조치)**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1995학년도 총량규제의 내용은 제 24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학 첨단관련 이공계학과의 2천인이내의 입학정원의 증원으로 한다.

**제 6 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6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서 “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제 7 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제9조 관련)**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서울특별시	동두천시	가평군
인천직할시	안산시	양평군
(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	오산시	여주군
의정부시	송탄시	이천군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구리시	평택시	광주군
미금시	연천군	
하남시	파주군	남양주군
고양시	강화군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에 한한다)
수원시	용진군	용인군
성남시	포천군	(용인읍, 포곡면, 모현면, 외사면, 내사면과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고당리·문촌리에 한한다)
안양시	양주군	
부천시	김포군	
광명시	화성군	
과천시	평택군	
의왕시		
군포시	남양주군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	(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면에 한한다)	
	용인군	안성군
	(기흥읍, 구성면, 수지면, 남사면, 이동면과 원삼면 목신리·죽릉리·학일리·독성리에 한한다)	(일죽면과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울곡리·내장리·배태리·내강리에 한한다)
	안성군	
	(안성읍, 대덕면, 미양면, 공도면,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면과 죽산면 두교리·당목리·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미장리·진촌리·기솔리에 한한다)  인천직할시중 남동유치지역 시흥시중 반월특수지역	

[별표 2] 과밀부담금의 산정방식(제18조 관련)

1. 제3조제4호의 업무용시설·판매용시설·업무용시설 및 판매용 시설(이하 “업무용시설등”이라 한다)이 주용도인 업무용 건축물·판매용건축물·복합용건축물의 경우(증축·용도변경의 경우는 증축·용도변경으로 업무용시설등이 주용도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신축의 경우

(1) 주차장면적과 기초공제면적의 합계면적이 기준면적(업무용건축물은 2만5천제곱미터, 판매용건축물은 1만5천제곱미터, 복합용건축물로서 부과대상면적중 판매용시설의 면적이 용도별 면적중에서 가장 큰 건축물은 1만5천제곱미터, 기타 복합용건축물은 2만5천제곱미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지 아니하

는 경우

부담금 = (기준면적 - 주차장면적 - 기초공제면적) × 단위면적당 건축비 × 0.05 + 기준면적초과면적 × 단위면적당 건축비 × 0.1

기초공제면적은 5천제곱미터로 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

(2) 주차장면적과 기초공제면적의 합계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부담금 = (신축면적 - 주차장면적 - 기초공제면적) × 단위면적당 건축비 × 0.1

나. 증축의 경우

(1) 기존 건축물의 면적(이하 “기준면적”이라 한다)이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기준면적과 증축면적중 주차장면적의 합계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text{부담금} = (\text{기준면적} - \text{기존면적} - \text{증축면적중 주차장면적}) \times \text{단위면적당 건축비} \times 0.05 + \text{전체면적중 기준면적초과면적} \times \text{단위면적당 건축비} \times 0.1$$

기존면적이 기초공제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기존면적” 대신 “기초공제면적”을 적용한다.

(나) 기존면적과 증축면적중 주차장면적의 합계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text{부담금} = (\text{전체면적} - \text{기준면적} - \text{증축면적중 주차장면적}) \times \text{단위면적당 건축비} \times 0.1$$

기존면적이 기초공제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기존면적” 대신 “기초공제면적”을 적용한다.

(2) 기존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text{부담금} = (\text{전체면적} - \text{기준면적} - \text{증축면적중 주차장면적}) \times \text{단위면적당 건축비} \times 0.1$$

다. 용도변경(업무용시설등이 아닌 시설에서 업무용시설등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미 부담금이 부과된 시설을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의 부담금 산정

은 증축의 경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존면적” 대신 “전체면적 - 용도변경면적”을 적용하며, “증축면적중 주차장면적” 대신 “용도변경면적중 주차장면적”을 적용한다.

라. 대통령령 제14234호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령 시행후 신축하여 증축·용도변경하는 것으로서 업무용시설 등이 주용도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증축·용도변경을 건축물 전체를 신축하는 것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가목의 식에 의하여 부담금을 산정하며, 이중 이미 부담금이 부과된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 면적을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 산정한다.

마. 주상복합건축물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시설이 포함된 건축물에 대한 부담금은 주거용면적 또는 기부채납시설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하 “산정대상 면적”이라 한다)에 대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산정대상 면적이 가목 (1)의 기준면적보다 작은 때에는 기준면적 대신 산정대상면적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업무용시설등이 주용도가 아닌 업무용건축물·판매용건축물·복합용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의 경우 부담금은 업무용시설등의 면적(업무용시설

등에 부속된 주차장 면적을 포함한 면적을 말한다)만을 건축물의 면적으로 보고 제1호가목 내지 마목의 식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 3. 제3조제3호의 공공청사의 경우

#### 가. 신축의 경우

$$\text{부담금} = (\text{신축면적} - \text{주차장면적} - \text{기초공제면적}) \times \text{단위면적당 건축비} \times 0.1$$

기초공제면적은 3천제곱미터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 나. 증축의 경우

$$\text{부담금} = (\text{전체면적} - \text{기존면적} - \text{증축면적중 주차장면적}) \times \text{단위면적당 건축비} \times 0.1$$

기존면적이 기초공제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기존면적”대신 “기초공제면적”을 적용한다.

다. 용도변경(공공청사가 아닌 시설에서 공공청사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미 부담금이 부과된 시설을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의 부담금 산정은 증축의 경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존면적”대신 “전체면적-용도변경면적”을 적용하며, “증축면적중 주차장면적”대신 “용도변경면적중 주차장면적”을 적용한다.

라. 제1호라목 및 마목의 규정은 공공청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서의 단위면적당 건축비는 1제곱미터당 표준건축비(정부예산편성기준중 대형 공공청사의 건축공사비를 말한다)로서 건설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 개정이유 □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1994. 1. 7, 법률 제4721호)됨에 따라 수도권 3개권역의 범위와 권역별 행위제한 내용을 정하고, 새로이 도입된 과밀부담금제도 및 총량규제 제도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

가. 수도권외의 3개권역중 과밀억제권역은 서울로부터 반경 4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중에서 인구밀도나 인구증가율이 수도권외의 평균수준보다 높은 지역으로 하고,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질보전과 관련하여 한강수계 상류의 본류 및 지류지역으로 하며, 기타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하여 그 구체적 범위를 정함(령 제9조 및 별표 1).

나. 3개권역을 그 특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대학·공공역사·연수시설의 설치를 억제하고, 국제도시로서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시설등은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성장관리권역에서는 수도권에 설치가 필요한 공공역사·연수시설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안에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공업지역도 제한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연보전권역에서는 한강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현행 규제수준을 유지하도록 함(령 제10조 내지 제14조).

다. 법률에서 과밀억제권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업무용·판매용 건축물이나 공공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밀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함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지역을 서울특별시로 정하고, 부과대상건축물의 규모는 현행 규제규모를 감안하여 업무용건축물은 연면적 2만5천제곱미터이상, 판매용건축물은 1만5천제곱미터이상, 공공청사는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함(령 제16조).

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과밀부담금을 면제하고, 도심지재개발 사업과 관련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과밀부담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함(령 제17조).

마. 법률에서 수도권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에 대하여는 연간 총허용량을 정하고 그 범위안에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허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총허용량의 설정 및 그 집행방법을 정함(령 제21조 내지 제23조).

(법제처 제공)